<개 정 대 비 표>

1. 대상 약관 :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약관

2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
3. 개정 대비표

현행	개정안	비 고
제 3 조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(직전 과세기간에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한다)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이하 "계좌"라고 한다)에 2018 년 12 월 31 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(이하 이 조에서 "이자소득등"이라 한다)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 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, 200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」에도 불구하고 100 분의 9 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. 1.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자(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) 2.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「소득세법」에	**제 3 조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)**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(직전 과세기간에 「소득세법」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한다)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이하 "계좌"라고 한다)에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(이하 이 조에서 "이자소득 등"이라 한다)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 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, 200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」에도 불구하고 100 분의 9 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. 1.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 개 과세기간 중에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자(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2.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 개 과세기간 중에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자(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. 이하	개정 세법 반영

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자(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)	이 조에서 같다) 3. 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에서 정하는 농어민	
제 4 조 (생략)	**제 4 조 (현행과 같음)**	
제 5 조(업무의 위탁) ① 회사는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 3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,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. 다만 투자일임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,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의 운용업무(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.),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 업무 및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증권, 장내파생상품, 「외국환거래법」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 주문업무는 위탁할 수 있다.	**제 5 조(업무의 위탁)** ① 회사는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 3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,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. 다만 투자일임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,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100 분의 50 범위 내에서의 운용업무,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 업무 및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증권, 장내파생상품, 「외국환거래법」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 주문업무는 위탁할 수 있다.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반영